

수원지방법원 2023. 12. 13 선고 2021가합132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송민석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선애, 최유수

변론 종결 2023. 10. 18.

판결 선고 2023. 12. 1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11,249,8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C의 어머니이고, 원고는 C의 친구인 D의 남편이다.

나. C은 2016.경 가출하여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면서, 2017.경부터 친구인 D, D의 아버지인 E 및 D의 남편인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,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갑 제2, 3, 4호증(이하 '이 사건 차용증'이라고 하고,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'이 사건 제차용증'이라 한다)으로 제출하였다.

1) 갑 제2호증 : "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인 3억 원을 대신 채무이행하겠습니다. 6. 22. 화요일 3억 원을 지불할 예정입니다. 선금 20만 원 먼저 드립니다. 지불 후 지불완료증서 작성 부탁드립니다."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, 피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, 피고의 이름 위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.

2) 갑 제3호증 : 차용증이라는 표제 하에 "피고는 2017. 6. 15. C이 채무한 빚에 한하여 그 금액의 50%를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.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그 금액의 2배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처벌이 행해진다면 받겠습니다. 2021. 6. 30.까지 F와 함께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. 위 날짜보다 빠르게 마련될 시 C을 통해 채무 이행할 것입니다."라는 내용과 함께, 피고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, 피고의 이름 위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.

3) 갑 제4호증 : 차용증이라는 표제 하에 "피고는 C이 채무한 빚(5억 7,000만 원 중의 일부인 3억 원)을 대신 채무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또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배우자인 G를 통하여 변제이행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 변제기일인 2021. 6. 30.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 위 금액의 두 배를 지불할 것이며 형사처벌도 받겠습니다. 위 날짜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마련될 시 C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."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, 피고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와 함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13호증, 을 제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증인 C의 일부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① D 명의의 H은행 계좌1) 를 사용하면서 2017. 8.경부터 2019. 9.경까지 원고, D, E으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58,235,061원을 차용하였고, ② 2017. 8.경부터 2019. 4.경까지 D 명의의 위 계좌로 은행 신용대출, 카드를 받는 방식으로 합계 51,500,000원2) 을 차용하였으며, ③ 2017. 9.경부터 2019. 10.경까지 C이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E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29,054,604원을 차용하였고, ④ 무단으로 E 명의로 보험대출 및 카드를 받은 후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합계 25,230,000원3) 을

임의 소비하였는바, C은 D, E과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며 D,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④ 합계액 264,019,665원에서 C이 기존에 변제한 52,769,862원을 공제한 211,249,9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.

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, 보증금 211,249,9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,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.

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,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,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. 또한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·날인·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,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·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(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).

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8, 9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I의 감정 결과,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

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

보면,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,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.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조 항변은 이유 있다.

① 원고는 2022. 8. 4.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,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, 2차용증의 경우 피고가 직접 글씨를 쓰고 무인을 날인하였고, 이 사건 제3차용증은 C이 글씨를 쓰고 피고가 무인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. 그러나 감정인은 이 사건 제1, 2차용증의 필적은 피고의 필적과는 상이점이 많이 관찰되어 피고의 필적으로 볼 수 없고,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지문이 피고의 지문인과 동일 지문인지 여부는 판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②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22. 8. 4.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"피고가 이 사건 제1, 2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무인을 날인한 후 D에게 교부하는 것을 보았고, 이 사건 제3차용증의 경우 손이 불편하다는 피고를 대신해서 자신이 내용을 기재하였으며, 피고가 손도장을 찍은 후 D에게 이를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."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. 그러나 감정인은 이 사건 제2차용증 및 이 사건 제3차용증이 동일인의 필적으로 볼 만한 유사성이 관찰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, 이 사건 제2차용증은 피고가 작성하고 이 사건 제3차용증은 C이 작성하였다는 C의 위 증언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배치된다.

③ 원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채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C과 원고, D, E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(갑 제8호증)과 차용증 작성일 전후에 이루어진 C과 원고, D, E 사이의 금전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좌거래내역과 관련된 모바일뱅킹 캡처화면(갑 제9호증의 1 내지 14)을 제출하였다. 이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대조하여 본 결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하자, 원고는 "C이 E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E의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하여 계좌거래내역을 캡처한 후 뷰티플러스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거래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갑 제9호증의 1 내지 9, 10 내지 14을 위조하였다."라는 내용의 C 작성 사실확인서를 증거(갑 제13호증)로 제출하여 사실과 다른 증거가 제출된 경위를 밝히며, C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 관련 종전

주장을 제2의 가.항과 같은 내용으로 전면 변경한 바 있다.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무인을 날인하였다는 C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.

2)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, 그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211,249,980원의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,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. 원고의 주장은 주채무의 존재와 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맹준영

판사홍연경

판사임정빈

1) 계좌번호(계좌번호 1 생략)

2) = 2017. 8. 23.자 25,000,000원 + 2018. 3. 13.자 19,000,000원 + 2018. 10. 15.자 2,500,000원 + 2019. 4. 30.자 5,000,000원

3) = 19,000,000원 + 6,230,000원